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2. 16 선고 2020가단1151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

담당변호사 김동길

피 고 1. A

2.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 2021. 1. 20.

판결 선고 2021. 2. 16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59,517,076원 및 그중 59,516,949원에 대하여 2020. 8. 20.부터 2020. 10. 29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. 12. 16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. 12. 18. 접수제23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19. 12. 16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18. 피고 회사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. 12. 18. 접수 제23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나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. 3. 28. 채무자 피고 A, 근저당권 C조합으로 한채권최고액 91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갑 제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① 원고는 2018. 4. 24.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59,500,000원, 보증기한을 2023. 3. 31.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원고는 피고 A에게 보증금액 59,500,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서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서'라 한다)를 발급해 주었고,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A는 D은행에서 59,500,000원의 운전자금대출을 받은 사실, ② 피고 A에 대하여 2020. 2. 17.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0. 8. 20. D은행에 60,032,345원(원금 59,500,000원 + 이자 532,345원)을 대위변제하였고, 그 중 515,396원을 회수한 사실, 3 위 회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27원이 고,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9%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 A는

원고에게 59,517,076원(60,032,345원 - 515,396원 + 127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9,516,9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. 8. 20.부터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10. 29.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시점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긴 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바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.

나. 피고 A의 무자력

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가액 124,130,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이

합계 311,5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, 피고 A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순번	채무의 표시	금액
1	E조합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	30,000,000원
2	F조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무	70,000,000원
3	F조합에 대한 주택외부동산 대출채무	61,000,000원
4	C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채무(채권최고액 기준)	91,000,000원
5	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된 D은행에 대한 운전자금대출	59,500,000원
합계		311,500,000원

다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

1) 이와 같이 피고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.

2)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하고,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정아